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09. 01.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충분한 데이터의 품질과 유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과 안전조치를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개정 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고도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양질의 데이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관련 의원발의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민병덕 의원안 2025. 1. 31. 제안, 고동진 의원안 2025. 3. 13. 제안).

② 주요 개정 내용

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특례 신설 및 특례 적용 요건(제28조의12 제1항)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성능 개선 포함)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달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영상·음성·이미지·부호·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이루어진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클라우드 이용 등 개별적인 처리 환경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나.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제28조의12 제2항)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이때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의12 제4항). 간소화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절차가 향후 대통령령 및 보호위원회 고시를 통해 정해지는 만큼, 실무적으로는 기존 모델의 개선·변경이나 유사 서비스의 추가 출시가 어느 범위까지 간소화 대상에 포함될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험요인평가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요인평가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제28조의12 제3항). 따라서 민감정보 등을 활용하거나 정보주체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AI 기술·서비스의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평가 절차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사후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28조의13, 제28조의14)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②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보호위원회가 부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심의·의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⑤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례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심의·의결 당시 필요한 조건을 일회적으로 갖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시사점

가.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 가명·익명처리 또는 규제샌드박스 등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 외에,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시적 법적 경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례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더하여 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 위험요인평가나 추가적인 안전조치 등이 요구될 수 있어 특례 신청이 반드시 가장 간명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개별 AI 개발 프로젝트별로 현행법상 활용 가능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한 후,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 활용 필요성과 보호위원회 심의 등 특례 이용에 수반되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례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사전심의 및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 절차 수립 필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 적용 시 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인공지능 개발을 완료한 이후 개인정보 관련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보다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요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특례 신청 절차가 실제 인공지능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에도 보호위원회의 조건을 계속 준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 자료 제출 및 사후 점검 등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례 신청을 일회적인 인허가 절차로 보기보다는 신청, 심의, 실제 개인정보 이용 및 특례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공익성 또는 사회적 필요성 요건 충족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특례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공지능의 개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이익의 증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안전·보이스피싱 방지 등 사회적 편익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분명한 인공지능 기술과 달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나 마케팅·엔터테인먼트 분야의 AI, 범용 LLM의 성능 개선 등 상업적 성격이 강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는 위 요건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이 모델 경쟁력 제고, 추천·광고의 정확도 향상 등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기존에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활용이 기업의 사업상 이익을 넘어 어떠한 공공적·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지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관련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판단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기업으로서는 특례 적용을 전제로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AI 기술·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 하위법령 및 심의·의결 사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보호위원회도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추가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제28조의12 제6항), 공개 사례와의 유사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위원회의 판단기준을 사전에 반영하여 특례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구성원

최진혁 구성원변호사

T. 02-2010-4967
E. jinhyuk.choi@barunlaw.com

최영노 구성원변호사

T. 02-3479-7876
E. genie7@barunlaw.com

이혜준 소속변호사

T. 02-2010-4966
E. hyejun.lee@barunlaw.com

김태형 소속변호사

T. 02-2010-4987
E. taehyung_kim@barunlaw.com